

08 신고 및 통지 - §21~23, §15, 규칙§16, 규칙§19

연금공단에 신고	사업장가입자	사용자가	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,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·폐업 등에 관한 사항, 가입자 자격의 취득·상실,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	
	지역가입자, 임의가입자, 임의계속가입자	가입자가	자격의 취득·상실, 이름 또는 주소의 변경 소득에 관한 사항	
		대리신고	부득이한 사유로 (지역,임의,임의계속)가입자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, 배우자or기타가족이 신고를 대리 可	
	신고기한	다음달 15일까지		
통지	신고인에 대한 통지	공단은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,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.		
	가입자등에 대한 통지	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·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,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	사업장가입자는	그 사업의 사용자에게 통지
			지역가입자, 임의가입자, 임의계속가입자는	그 지역·임의·임의계속가입자에게 통지
	공단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해당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하되, 통지받을 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.			
	통지의 같음	공단은 통지같음사유가 발생하면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같음 可		
사유		사업장 폐지		
		통지받을 자의 소재를 몰라 사용자가 연금공단에 그 뜻을 통지한 경우.		
		통지를 받을 (지역·임의·임의계속)가입자의 소재불명		
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(無)				
방법 (규칙§19)	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공단계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같음 可			
기타	사망의 추정	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자로서 생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은 가입자의 자격 확인 및 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(산재법과 동일)		